

환경부 공고 제2023-137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를 지정하는 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일

환경부장관

강원권 및 건강 영향 특성화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 계획 재공고

□ 계획 수립 근거

-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제1항*

*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 센터 지정 배경

-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기관·법인·단체 중에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를 지정 (미세먼지법 제25조의2 제1항)

-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는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과 그 밖의 지역 및 국제협력 등 분야에 대해 지정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운영지침」 등)

- 대기관리권역 4개 권역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는 旣 지정

※ '21년 : 수도권(인하대) 및 중부권(공주대)

'22년 : 남부권(전남환경산업진흥원·목포대) 및 동남권(울산과학연구원)

- '23년 국고 예산(민간경상보조)으로 신규 지정 2개소 국고 지원액 698백만원(개소당 349백만원) 확보

※ 국비 예산액 이상으로 자부담 매칭 필요

□ 신규 지정 센터의 수

- '강원권' 및 '건강 영향 특성화' 각 1개소

□ 대상기관 및 자격요건

- (대상기관) 강원도에 소재하거나 건강 영향 특성화 분야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자격요건) 대상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다음 요건 중 시설·장비 및 연구인력에 관한 세부 기준은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및 별표 4에 따름
 -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이하 “미세먼지연구업무”라 함)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갖출 것
 - 시료채취, 미세먼지 측정 및 원인물질 분석 등을 위한 시설·장비를 갖출 것
 - 환경공학, 대기환경, 대기과학, 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연구인력을 갖출 것
 -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것
- ※ 매년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이상의 현금 또는 현물을 자기 부담해야 함

□ 센터 지정 방법

-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를 지정**

※ 심사단은 서면심사(80점)와 현장심사(20점)를 종합하여 심사하나, 서면심사 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거치지 않고 부적합으로 결정

□ 제출서류, 신청기한 및 접수처

- (제출서류)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및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운영 지침」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모두 제출** (모든 서류를 포함하여 책자 형식으로 제본 후 15부 제출)

-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
- 미세먼지연구업무에 관한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별표 제4호의 시설·장비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별도 서식 없음)
-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별표 제4호의 연구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별도 서식 없음)
- 미세먼지연구업무에 관한 **실적**(별도 서식 없음)
- **재정현황에 관한 서류와 재정보호계획서**(별도 서식 없음)
 - ※ 재정현황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하는 등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 ※ 재정보호계획은 국고보조금 이상의 자기부담금(현금 또는 현물)을 확보할 실현가능한 계획을 명시하고, 신청기관장의 **확약서를 첨부**해야 함
-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구성 및 운영계획서**(「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운영지침」 별지 제2호 서식)

- 미세먼지연구업무 **공동수행·협력계획서**(별도 서식 없음,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업무를 다른 센터와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다른 연구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수행할 경우 제출)
- **(공고 및 접수기간) 2023년 3월 3일 ~ 3월 22일 18시**
 - ※ 접수처 도착 기준으로, 방문 접수와 우편(택배) 접수 모두 가능하나, 우편(택배) 접수는 신청기한 내 도착한 경우만 접수 처리
- **(접수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505호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신병선 주무관, ☎ 044-201-6876)

□ 기타사항

-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신청·심사 기준 및 절차 등 그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첨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운영지침」에 따름

□ 향후 일정(안)

- (3.3~3.22) 지정계획 공고
- (3~4월 중) 서면·현장 심사 및 지정
 - ※ 심사 및 지정 일정은 변경 가능

※ 참고 :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별표 제4호

※ 별첨 :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운영지침」 끝.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시설·장비 및 연구인력에 관한 지정 기준(제19조의2 관련)

1. 시설·장비 기준: 다음 각 목의 시설·장비를 모두 보유하고 있을 것. 다만, 환경부장관이 영 제14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중점 업무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나목 또는 다목의 시설·장비를 갖출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장비는 제외한다.

가. 실험실, 전산실 또는 사무실

나. 대기 배출원 측정장비 1벌 또는 대기질 측정장비 1벌

다. 채취 시료 전처리 및 기기분석 장비 1벌

라. 미세먼지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산장비 1벌

2. 연구인력 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갖출 것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 또는 대기관리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2) 환경공학, 환경학, 대기환경,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환경보건 또는 대기과학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3) 환경공학, 환경학, 대기환경,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환경보건 또는 대기과학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갖출 것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 화학분석 또는 대기환경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대기환경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 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자격(대기환경측정분석 분야에 한정한다)을 취득한 사람
- 4) 환경공학, 환경학, 대기환경,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환경보건 또는 대기과학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환경공학, 환경학, 대기환경,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환경보건 또는 대기과학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명 이상을 갖출 것